

## 보 도 설 명 자 료

( '22. 7. 28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올해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를 0.9만원에서 4만원  
으로 344% 인상하였으며, 동절기(7개월)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 
일부를 하절기에 당겨쓸 수 있어 하절기(3개월)에 전체 에  
너지바우처 지원액의 45.9%를 사용할 수 있음

(7.28일 경향신문 「폭염에 취약계층 혈떡이는데...냉방예산은 난방  
예산의 24%」 보도에 대한 설명)

### 1. 기사내용

□ 폭염에 취약계층 혈떡이는데 냉방예산이 난방예산의 24%

### 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- '22년 에너지바우처사업은 추경 등을 통해 지원대상을 생계·의료급여 대상 중 더위·추위 민감계층 88.9만 가구에서 주거·교육급여 대상 중 더위·추위 민감계층까지로 포함한 117.6만 가구로 확대하였으며,
- 지원단가도 7월~9월, 3개월간 사용하는 하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경우 가구 당 평균단가를 0.9만원에서 4만원으로 344% 인상하여 현실화 하고, 10월~차년도 4월, 7개월 간 사용하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11.8만원에서 14.5만원으로 22.9% 인상하였음
- 이와 관련하여 수혜자가 희망하는 경우, 하절기에 4.5만원의 범위 내 에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당겨쓸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

운영하고 있어, 하절기 3개월 간에 전체 10개월 간 사용하는 에너지  
바우처 지원액의 45.9%를 사용할 수 있음

□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고효율의  
냉방기(에어컨 등), 냉·난방 겸용기기, 단열·창호 시공, 보일러 교체  
공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,

○ 에너지바우처와 같이 냉·난방에 사용되는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 
사업은 아니며,

○ 냉방기 지원에 비해 단열·창호 시공\*, 냉·난방 겸용기기\*\*, 보일러  
교체 공사 지원 등의 경우 사업종류나 비용단가가 높아 냉방기  
지원 단일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배정되고 있음

\* 단열·창호 시공의 경우에는 난방뿐만 아니라 냉방효율을 높이는 사업임

\*\* 난방뿐만 아니라 냉방기의 기능도 겸용

※ 문의 : 자원안보정책과 김호성 과장(044-203-5140)

성상훈 사무관(044-203-5253)